

(재학생) 2021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관련 안내

- 2021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기간은 2021. 2. 22.(월) 10:00 ~ 2021. 2. 24.(수) 23:50입니다.

재학생 여러분들은 이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과 관련하여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1. 수업계획서 확인

교육과정이 개편된 교과목들의 수업내용과 범위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강신청 전에 각 과목의 수업계획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재수강시 대체과목목록

변경교과목을 재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대체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수강으로 취득할 수 있는 성적의 최고등급은 학칙에 따라 **B+**까지임을 유의 바랍니다.

[대체과목 목록]

변경전 교과목명	대체 교과목명
헌법기초이론	헌법1
기본권론	헌법2
통치구조론	헌법2
헌법쟁점연구	헌법연습
민사절차법일반	민사소송법1
민사증거법	민사소송법2
민사집행법	민사절차법특강
민사상소제도론	민사소송법종합세미나
민사절차법판례연구	민사소송법연습
민사절차법연습	민사소송법연습
특별형법	형법특강

[대체과목 목록]

변경전 교과목명	대체 교과목명
형사절차법일반	형사소송법1
형사증거법	형사소송법2
형사상소제도론	형사소송법특강
행정법일반	행정법1
행정구제법	행정법2
특별행정법	행정법3
행정법판례연구	행정법연습
행정분쟁사례연구	행정법연습
상법기초이론	상법1
회사법	상법2
어음수표법	상법3
보험해상법	상법3
상법판례연구	상법연습
상법종합연습	상법연습
민법기초이론	민법1
채권법총론	민법2
채권법각론	민법3
물권법	민법4
가족법	민법5
국제법일반	조약법연구
WTO법	국가책임법연구
국제법연습	국제법사례연습
법철학	법철학,생명,국가
민사기록사례연습	민사실무1 또는 민사실무2

3. 수업범위(자세한 내용은 각 수업계획서 참조)

변호사시험 대비 적합성 및 수업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다음 과목들을 재편성하였습니다. 각 교과목들의 개략적 수업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

[수업범위]

영역	범위
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1 : 헌법총론 + 기본권론(전반부) ■ 헌법2 : 기본권론(후반부) + 통치기구론
행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법1 : 처음부터 행정작용법까지 강의 ■ 행정법2 : 행정구제법을 중심으로 강의 ■ 행정법3 : 특별행정법을 중심으로 강의
형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소송법1 : 처음부터 공판까지 강의 ■ 형사소송법2 : 형사증거법부터 상소제도까지 강의 ■ 형법특강 : 특별형법을 포함하여 강의
민사소송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사소송법1 : 처음부터 민사증거법 이전까지 강의 ■ 민사소송법2 : 민사증거법부터 상소제도까지 강의 ■ 민사절차법특강 : 민사집행법을 포함하여 강의
상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법1 : 상법총칙/상행위, 회사법 일부(회사법 통칙까지) ■ 상법2 : 회사법 ■ 상법3 (분반-문정해) : 회사법, 어음수표법 ■ 상법3 (분반-김선광) : 회사법, 보험해상법 ■ 상법연습 : 선택형 및 사례형 연습
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법1 : 민법총칙 ■ 민법2 : 채권총론 ■ 민법3 : 채권각론 ■ 민법4 : 물권법 ■ 민법5 : 가족법

내용과 범위는 각 과목의 수업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특강 및 종합세미나 과목의 수업범위 등 기타 사항

- (1) 특강과목(헌법특강, 행정법특강, 형법특강, 형사소송법특강, 민사절차법특강) 및 종합세미나과목(민사소송법종합세미나, 행정법종합세미나)은

해당 과목의 전체영역에 걸쳐 담당교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점에서 특강과목과 종합세미나과목의 성격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2) 수업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각 교과목의 강의계획서를 참조하되, 특정의 범위나 내용을 포함하여 강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에 유의해 해 주기 바랍니다(예컨대, ‘형법특강’은 특별형법을 포함하여 강의가 이루어지고, ‘민사절차법특강’은 민사집행법을 포함하여 강의가 이루어짐)
- (3) 그 외 새롭게 개설되거나 조정되는 과목들의 상세한 수업내용과 범위에 대해서는 각 수업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실무실습과목 분반 수강최대인원 제한

과목	분반	분반별 수강최대인원
법률정보조사	01반, 02반	33명
실습과정B	01반, 02반, 03반	21명
모의재판	01반, 02반, 03반	33명

- ※ 실무실습과목 이수체계상 실습과정B와 모의재판 과목은 3학년생에 한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습니다.
- ※ 실무실습과목 분반에 대한 최대 수강인원제한은 법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 제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강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2. 15.

법학전문대학원장